

2010회계연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

세 입 · 세 출 결 산 증 인 안

평 창 군 수

2010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의안 번호	7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06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1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2010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세입결산액 (B)	B/A (%)	세출결산액 (C)	C/A (%)	차입잔액 (D)=(B)-(C)	D/A (%)
계	286,423,029,000	321,598,111,100	321,369,483,723	99	291,557,922,472	91	29,811,561,251	9
일반회계	233,571,090,000	255,973,922,830	254,425,569,560	99	234,981,924,162	92	19,443,645,398	8
특별회계	52,851,939,000	65,624,188,270	66,943,914,163	102	56,575,998,310	86	10,367,915,853	16

나. 세입결산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징수결정액 (B)	B/A (%)	수납액 (C)	C/A (%)	미수납액 (D)=(B)-(C)	D/A (%)
계	286,423,029,000	321,598,111,100	331,996,131,306	103	321,369,483,723	99	10,626,647,583	3
일반회계	233,571,090,000	255,973,922,830	262,282,853,473	102	254,425,569,560	99	7,857,283,913	3
특별회계	52,851,939,000	65,624,188,270	69,713,277,833	106	66,943,914,163	102	2,769,363,670	4

다. 세출결산

(단위 : 원)

회계별	예산액	예산현액 (A)	지출액 (B)	이월액		집행잔액 (D)		
				B/A (%)	C/A (%)			
계	286,423,029,000	321,598,111,100	291,557,922,472	91	20,341,661,958	6	9,698,526,670	3
일반회계	233,571,090,000	255,973,922,830	234,981,924,162	92	14,403,641,678	6	6,588,356,990	2
특별회계	52,851,939,000	65,624,188,270	56,575,998,310	86	5,938,020,280	9	3,110,169,680	5

라. 결산상 세입·세출 처리상황

(단위 : 원)

구분 회계별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조금 집행잔액	순세계 잉여금
계	29,811,561,251	7,574,012,690	2,242,770,330	10,524,878,938	917,710,802	8,552,188,491
일반회계	19,443,645,398	6,956,058,330	1,958,967,420	5,488,615,928	856,974,672	4,183,029,048
특별회계	10,367,915,853	617,954,360	283,802,910	5,036,263,010	60,736,130	4,369,159,443

※ 순세계잉여금=세입결산액-세출결산액-명시이월-사고이월-계속비이월-보조금집행잔액

마.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

(단위 : 원)

구분 회계별	재정상태보고서			재정운영보고서		
	자 산	부 채	순자산	비 용	수 익	운영차액
일반회계(A)	1,963,605,097,698	44,925,263,223	1,918,679,834,475	156,361,547,582	215,245,989,286	58,884,441,704
공기업특별회계(B)	99,821,814,629	1,324,548,559	98,497,266,070	5,887,999,739	4,679,845,750	(1,208,153,989)
기타특별회계(C)	200,364,502,028	1,006,419,905	199,358,082,123	9,811,121,669	27,018,983,413	17,207,861,744
기 금(D)	11,683,371,310	4,953,818,001	6,729,553,309	251,691,887	1,595,378,790	1,343,686,903
내부거래(E)	(47,790,877,739)	(7,862,593,739)	(39,928,284,000)	(8,054,902,980)	(8,054,902,980)	0
합 계 (A+B+C+D+E)	2,227,683,907,926	44,347,455,949	2,183,336,451,977	164,257,457,897	240,485,294,259	76,227,836,362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관계법령 발췌서 붙임”

- 지방자치법 제134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

나. 기타사항

-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, 재무보고서 붙임
-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 붙임

관계법령 발췌서

지방자치법

제134조 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[개정 2008.2.29 제8852호(정부조직법)]

③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시행령

제59조 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·세출결산서에는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, 계속비결산보고서, 지방자치단체의 채권·채무에 관한 보고서,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.[개정 2008.2.29 제20741호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]